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2019. 6. 12.(수) 10:00】

201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 시 · 교 통 위 원 회

검 토 보 고

2019. 6. 12.
전문위원 이 광 희

안건명: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도시관리국 소관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결산승인), 제129조(예비비승인) 및 제134조제1항(결산검사위원 의견서 첨부 제1차 정례회의 결산승인)
-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2. 결산 현황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
계	32,452,216	37,972,507	33,579,341	4,368,675	88.43
일반회계	32,041,375	37,553,085	33,159,919	4,368,675	88.3
특별회계 (기반시설)	410,841	419,422	419,422	0	10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률 (%)	불용률 (%)
일반회계	44,545,545	31,407,225	9,809,463	3,024,308	70.5	6.78

3. 검토의견

1) 세 입

○ 2018년도 도시관리국 세입 현황

- 예산현액 324억 5,221만 6천원
- 징수결정액 379억 7,250만 7천원
- 실제수납액 335억 7,934만 1천원
- 미수납액 43억 6,867만 5천원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8.43%로써 전년도(93.36%)대비 4.93% 감소함

◆ 2018, 2017회계연도 세입 비교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
2018년도	32,452,216	37,972,507	33,579,341	4,368,675	88.43
2017년도	21,035,713	23,451,455	21,894,970	1,556,485	93.36

2) 세 출

○ 2018년도 도시관리국 세출 현황

- 예산현액 445억 4,554만 5천원
- 지출액 314억 722만 5천원
- 이월액 98억 946만 3천원

-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30억 2,430만 8천원으로, 불용률은 예산 현액 대비 6.78% 이며, 전년도보다 0.75% 증가함

◆ 2018, 2017회계연도 세출 비교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률 (%)	불용률 (%)
2018년도	44,545,545	31,407,225	9,809,463	3,024,308	70.5	6.78
2017년도	32,484,386	14,421,153	16,104,185	1,959,042	44.39	6.03

◆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불용률
				계획 변경 등	예산절감 (유보액)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합계		3,792,922	1,501,967	700,000	20,327	431,352	350,288	39.59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	1,170,295	221,325	0	80	48,162	173,083	18.91
도시계획과	방화재정비촉진사업	288,660	205,288	0	633	27,450	177,205	71.11
공원녹지과	공산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700,000	700,000	700,000	0	0	0	100
	가로녹지 유지관리	1,633,967	375,354	0	19,614	355,740	0	22.97

-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총 4개, 15억 196만 7천원이며, 주요 원인으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62개단지 아파트 지원 사업 중 5개단지 아파트가 사업을 포기하였고 도시계획과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은 방화2구역에 대한 서울시 직권해제여부 결정 지연 및 계획 변경으로 용역을 미실시하여 발생하였고 공원녹지과 공산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용도 변경 후 문화체육과로 사업을 이관함에 따라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으며,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수 미달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불용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 보다 주의가 요구 됨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예산의 이용: 없음

○ 예산의 전용: 1건, 364천원

-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개최에 따른 민간위원 회의참석 교통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

◆ 2018년도 전용사업 ◆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전용사유
			감액	증액		
합 계			364	364		
도시 계획과	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무관리비)	8,000	364		2018-12-12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회의참석 교통비 지원 전용
	고도제한 완화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0		364		

4) 예비비: 1건, 2,682만 3천 원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명시이월	집행 잔액	이월사유 (부서)
부동산 정보과	개발부담금 환수 (배상금등)	26,824	26,823	0	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금액 상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

5) 다음연도 이월비: 33건, 98억 945만 9천 원

○ 명시이월: 15건, 68억 6,276만 6천 원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명시이월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8,877,089	-	6,862,766	-	
도시 계획과	화곡1동 주거생활권 계획수립	연 구 용역비	500,000	-	285,978	-	용역 완료 예정일이 2019년 12월 31일임에 따라 과업 진행을 위해 이월 후 사업 추진
	도시재생 사업	사 무 관리비	36,889	-	7,500	-	1차 서류점검(419개동) 및 2차 육안점검 (337개동) 후 3차 정밀안전점검 대상 을 축출(4개동, '18.12.6)하였으나, 구조 기술사 섭외 지연으로 인하여 정밀 안전점검이 연내 완료 불가하여 이월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연 구 용역비	300,000	-	141,855	-	2019. 11월 준공예정인 재정비용역에 대하여 원인행위 후 미집행된 금액을 명시이월, 발주예정인 재정비 교통 영향평가용역에 대한 예산 이월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명시이월	집행잔액	이월사유
공원 녹지과	공원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시설비	1,993,700	-	978,000	-	2018년 10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 후 사업 추진
	공원내 체육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996,500	-	499,169	-	사업대상지 일부가 사유지에 저촉됨에 따라 보상절차가 10월 말 완료예정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 후 사업 추진
	개화천 되살리기	시설비	992,800	-	893,064	-	금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발주가 어려워 이월 후 사업 추진
	개화천 되살리기	시 설 부대비	7,200	-	7,200	-	금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발주가 어려워 이월 후 사업 추진
	개화산 되살리기	시설비	1,295,760	-	1,295,760	-	2018년 9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연내 추진이 어려워 이월 후 사업 추진
	개화산 되살리기	시 설 부대비	4,240	-	4,240	-	2018년 9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연내 추진이 어려워 이월 후 사업 추진
	천문우주 과학관조성	시설비	1,942,980	-	1,942,980	-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11월에 교부되어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시행 등 연내 추진이 어려워 이월 후 사업 추진
	천문우주 과학관조성	시 설 부대비	7,020	-	7,020	-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11월에 교부되어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시행 등 연내 추진이 어려워 이월 후 사업 추진
	허준근린공원 환경정비	시설비	297,840	-	297,840	-	허준근린공원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11월에 교부되어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시행이 연내 추진되기 어려워 이월 후 사업 추진
	허준근린공원 환경정비	시 설 부대비	2,160	-	2,160	-	허준근린공원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11월에 교부되어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시행이 연내 추진되기 어려워 이월 후 사업 추진
	노후 어린이공원 보수보강	시설비	496,400	-	496,400	-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공사시행 등 연내 추진이 어려워 이월 후 사업 추진
	노후 어린이공원 보수보강	시 설 부대비	3,600	-	3,600	-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공사시행 등 연내 추진이 어려워 이월 후 사업 추진

※ 주요이월 내역

- 도시계획과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업 및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등 총 3개 사업은 준공 예정일이 2019년 12월 말로 예정 및 구조기술사 섭외 지연 등으로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
- 공원녹지과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은 대부분 2018년 12월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 지연 등으로 이월됨

○ 사고이월 : 18건, 29억 4,669만 3천원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사고이월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10,402,727	-	2,946,693	-	
도 시 디자인과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	시설비	154,159	-	7,685	-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사업으로 지역 주민동의 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 기간을 연장하여 이월 후 사업 추진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시설비	50,000	-	13,755	-	현수막 지정계시대 설치에 따른 사전 관련 업무 협의절차 이행과 계시대 제작 소요기간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이월 후 사업 추진
공 원 녹지과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	시설비	847,540	-	247,326	-	2018년 8월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원 정비를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후 사업 추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시설비	1,759,189	-	279,373	-	사전절차 수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월 후 사업 추진
	봉제산 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	시설비	1,451,340	-	761,100	-	기상여건 및 동절기 공사 품질 저하 우려 등에 따라 이월 후 사업 추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사고이월	집행잔액	이월사유
공원 녹지과	창의어린이 놀이터 재조성	사 무 관리비	1,500	-	1,400		2018년 11월 8일 발주함에 따라 -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 후 사업 추진
	창의어린이 놀이터 재조성	시설비	288,532	-	20,400		2018년 11월 8일 발주함에 따라 -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 후 사업 추진
	공원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시설비	1,993,700	-	427,384		동절기 기온저하 등 현장여건 - 반영에 따라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후 사업 추진
	까치산 근린공원 정비	시설비	695,176	-	192,909		2018년 8월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 수렴 등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후 사업 추진
	까치산 근린공원 정비	시 설 부대비	4,824	-	4,824		2018년 8월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 수렴 등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후 사업 추진
	까치산 근린공원 정비	시설비	445,000	-	159,775		2018년 10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 주민의견수렴 등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화장실 및 주변 조경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후 사업 추진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99,280	-	93,845		공원내 화장실 설치 반대민원이 - 발생하여 여론 및 공원내 시설물 설치 의견 수렴 등의 사전 절차가 길어짐에 따라 동절기를 피해 공사를 추진하고자 이월 후 사업 추진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	시 설 부대비	720	-	720		공원내 화장실 설치 반대민원이 - 발생하여 여론 및 공원내 시설물 설치 의견 수렴 등의 사전 절차가 길어짐에 따라 동절기를 피해 공사를 추진하고자 이월 후 사업 추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사고이월	집행잔액	이월사유
공원 녹지과	수명산 근린공원 시설 정비	시설비	496,400	-	113,765	-	공원내 소음민원 발생에 따른 방음벽 설치와 관련 소음피해 지역 (마곡수명산과38단지)의견 수렴 및 반영에 있어 과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동절기를 피해 공사를 추진하고자 이월 후 사업 추진
	우장산 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정비	시설비	794,960	-	399,717	-	산책로 노후 탄성포장재 교체 및 수목식재 공중이 동절기 도래로 인해 향후 하자 발생 등 품질저하가 예상되어 이월 후 사업 추진
	개화천 퇴살리기	시설비	992,800	-	78,480	-	2018년 4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사전절차(실시설계용역, 보고회 등) 이행 등으로 공사가 미착공되어 이월 후 사업 추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시설비	318,607	-	135,299	-	2018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아파트에서 주민 반대로 인해 사업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2018년 10월 사업대상지를 재선정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 후 사업 추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9,000	-	8,936	-	시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 전자복사기 구매 및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용품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연내 사무실 배치 등 사전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 후 사업 추진

※ 주요이월 내역

-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과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
동의 절차 지연과 현수막 지정계시대 설치에 따른 사전협의 지연 등
으로 이월함
- 공원녹지과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 등 총 16개 사업은 동절기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 2018년 말에 특별교부세 교부,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용역
지연 등으로 이월함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 당시부터 당해연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할 것임.

○ 계속비이월 사업비: 없음

6) 기금결산

○ 당해연도 말 현재액 : 1건, 33억 6,912만 8천원

(단위 : 천원)

기금명 (해당부서)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계	2,839,954	529,174	864,191	335,016	3,369,128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디자인과)	2,839,954	529,174	864,191	335,016	3,369,128

○ 2018년도 도시관리국 기금 현황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액 33억 6,912만 8천원이며, 전년대비 5억 2,917만 4천원이 증가함
- 증가 원인은 정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법광고물의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부과 징수한 수입으로,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

7) 성과보고서

- 2018회계연도 도시관리국은 정책사업목표 7개, 지표수 2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였으며, 초과달성 3개, 달성 18개, 미달성 2개로 나타남.

3. 종합의견

- 예산 결산은 예산 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 검토 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불용율(6.78)이 전년(6.03%)대비 0.75% 증가함
-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 도시계획과 방화재정비촉진사업 및 가로녹지유지관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발생하므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등 불필요한 예산의 전용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보조금(국·시비)이 회계연도 말에 지원·교부되어 공사기간 부족, 지역 주민 반대 및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이월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월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성과보고서의 경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거나 미달한 성과지표는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지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정책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산식과 단순한 목표치의 지표는 도전적이고 동기부여적인 성과지표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구 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잘 된 부분은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 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